

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

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재형, 김제리, 김태수,
김평남, 김희걸, 노승재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
양민규, 임종국, 장상기,
전석기, 최 선, 최용식,
최정순, 황규복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」는 1991년 서울특별시 소속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의 공무원직 전환으로 인하여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·정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